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63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지역공동체사업, 저출산 대응체계,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(안 별표 3)

○ 일반직 6급 이하 정원: 변동없음

- 현행: 605명(본청266명, 의회11명, 직속기관102명, 사업소49명, 읍39명, 면138명)

- 조정: 605명(본청266명, 의회11명, 직속기관100명, 사업소49명, 읍39명, 면140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, 제24조, 제29조, 제30조, 제38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개혁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5. 11.~5. 31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	
				소계	농업 기술센터	보건소				
총 계	676	284	14	133 135	69 71	64	54	40	151 149	
정무직	1	1								
일반직	소계	644	280	14	106 108	42 44	64	53	40	151 149
	4급	1	1							
	4~5급	3	2		1		1			
	5급	35	11	3	5	4	1	4	1	11
	6급 이하	605	266	11	100 102	40 38	62	49	39	140 138
별정직 (6급 상당 이하)	1	1								
연구직 (연구사)	5	2		2	2		1			
지도직 (지도사)	25			25	25					